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공포 : 2011. 11. 1
시행 : 2011. 11. 25

■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추가 (제34조의6 제2호, 제3호, 제4호)

- 부당특약의 유형에 ①도급계약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②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③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특약 추가

※ 현행규정은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각종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물가변동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 미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2.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신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신설>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제34조)

-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구성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 제31조, 시행 2011. 11. 25)
- 적정성 심사대상(하도급률 82%미달)을 상향 입법화(규칙→령)
-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구성
 - ※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분야 연구기관 연구위원급 이상, 건설분야 박사학위 취득하고 3년이상 연구·실무경험 있는 자, 건설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이상

■ 영업범위 제한완화에 따른 예외규정 구체화 (제19조, 제20조)

- 종합공사(전문공사)는 해당 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으나, 발주자가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법 제16조 및 제25조, 시행 2012. 5. 25)
- 예외규정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기술·특허를 개발·출원한 종합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 ※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70%이상인 경우로 한정

■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 (개정전) 30억원 미만 30% 직접시공
- (개정후)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 직접시공

■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 사업자단체 위탁 근거 신설 (제86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1호, 시행 2012. 5. 2)

개정 전	개정 후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시·군·구에 위임 처리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업무 대상으로 규정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개정 전	개정 후
조합원 위원(7~9인), 위촉전문가위원(7~10인)	조합원 위원(8~10인), 위촉전문가 위원(8~11인)

■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폐지(제79조)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일정금액* 미달시 부과하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폐지(법 제82조제1항제2호, 시행 2012. 5. 25)
 - ※ 설비·전문 : 5천만원 / 토목, 건축, 조경 : 2억5천만원, 토건 : 5억, 산업설비 : 6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공포 : 2011.11. 3
시행 : 2011.11.25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제13조의2)

-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하되 공중 상호간 연계성, 현장 제작·설치 작업 비중, 공사 수행과정·내용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규정
- 단,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 (제30조의2)

-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
- 예외사유 : ①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③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구체화 (제28조 ②)

-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 업체로서 1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BBB+이상인 경우 또는 2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사유로 명시

※ 상호협력평가 :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하도급법상 지급보증서 면제사유 : ① 하도급 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③ 원도급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결과 A등급이상을 받은 경우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개선 (별지 제17호의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을 위해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별표1 제1호 라목)

- 상호협력 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실적율을 3~6% 가산

